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
특별법 시행령(안)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) ①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통일부장관·법무부장관·국방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농림축산식품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환경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중소벤처기업부장관·국무조정실장·법제처장 및 산림청장
2. 강원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
3.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위

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3조(위원의 해촉)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,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위원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지원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

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④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(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)이나 공무원,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임직원 또는 민간전문가에게 지원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다.

1. 기획재정부차관, 교육부차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통일부차관, 법무부차관, 국방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, 문화체육관광부차관, 농림축산식품부차관, 산업통상자원부차관, 보건복지부차관, 환경부차관, 고용노동부차관, 국토교통부차관, 해양수산부차관, 중소벤처기업부차관, 국무조정실 차장, 법제처 차장 및 산림청 차장.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.
 2. 강원특별자치도(이하 “강원자치도”라 한다)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
 3.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- ② 실무위원회는 해당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- 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,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,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7조(실무지원단)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·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.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실무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전문요원)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
제9조(파견 요청)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실무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조사·연구 의뢰 등) ① 지원위원회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- ②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,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강원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

수집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지원위원회·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, 지원위원회·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 부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의 임직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, 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3조(종합계획의 수립 등 절차) ① 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 및 도교육감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.

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,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,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 기간에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.

⑤ 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

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 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)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1.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
2.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
3. 단순한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
4.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제15조(종합계획의 고시 등) 도지사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·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,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,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6조(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)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있어야 한다.

1.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[분원(分院)을 포함한다]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

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(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) 3개 이상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한다.

제17조(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청취)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(이하 “진흥지구개발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시장·군수에게 진흥지구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시장·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하며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이용진흥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,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 기간 내에 관계 시장·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)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.

1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2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
3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
4. 「국가철도공단법」에 따른 국가철도공단
5. 「한국관광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관광공사
6.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
7.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른 한국마사회
8.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」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
9. 「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」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
10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」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
1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한국 등산·트레킹지원센터

제19조(인·허가등의 의제) 법 제41조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
제20조(진흥지구 내 「산지관리법」 등 적용의 특례)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법 제30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

2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

3.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

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사도: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

2. 표고: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(標高: 산자락 하단부의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

③ 법 제42조제2항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. 다만, 지정면적은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.

2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. 다만, 산악스키,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.

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법 제30조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

2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

3.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제4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

⑤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진흥지구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사도: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

2. 표고: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할 것

제21조(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“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.

② 강원자치도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도로, 궤도, 주차장 등 교통시설

2. 수도·전기·가스공급설비, 방송·통신시설 등 유통·공급시설

3. 하수도,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,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

4.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시설

제22조(농어촌학교의 범위) 법 제4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.

1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5호의 농촌
2.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의 어촌

제23조(농지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(이하 이조에서 “성과평가”라 한다)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평가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,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
1.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성과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
3. 성과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·분석,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하거나,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결과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강원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는 「농지법」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도지사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자문을 거치고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특례의 연장 또는 폐지 및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4조(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(이하 이조에서 “성과평가”라 한다)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평가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,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
1.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성과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
3. 성과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
② 환경부장관은 평가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·분석, 평가 추진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하거나,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결과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강원자치도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성과평가를 객관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(이하 이조에서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3호·제4호의 단원 중 1인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의 평가단 업무수행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.

1. 법 제64조, 제67조, 제68조 특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각 1인
 2. 강원자치도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 1인
 3.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와 관련된 협의 제도에 대해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8인(도지사가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다)
 4. 지방 자치·분권 및 균형발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인(도지사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다)
- 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. 이 경우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1. 평가계획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
 2. 성과평가 세부 내용과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 작성
 3. 제1호·제2호 관련 환경부·강원자치도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·조정
- ⑥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의 보고서에 대해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특례의 연장 또는 폐지 및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평가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환경부장관은 평가단의 운영 중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⑨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 완료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체된 것으로 본다.

제25조(국가공기업의 범위 등) ① 법 제76조에 따른 국가공기업(이하 “국가공기업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.

② 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기업이 강원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그 국가공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.

제26조(발전협의회회의 구성·운영)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발전협의회(이하 “발전협의회”라 한다)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.

② 발전협의회회의 의장은 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국가공기업의 지사장 또는 지점장, 다만, 국가공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공기업의 장이 그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
2. 강원자치도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의 사장
4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강원자

치도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의 장

5.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발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「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은 폐지한다.